

부산광역시사하구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
----------	---

제출년월일 : 1999. 4. 15.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이유

체육시설관리를 위한 시설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권위적인 법령을 정비하고 주민들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 제12조 사용자의 책임사항에 사고예방 및 질서 유지의 의무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시설물의 파손, 오손, 분실시 책임 및 배상 근거의 규정 있으므로 주민들을 이중 규제하는 불합리한 규정 삭제(안 제5조)

3. 관계법령

국민체육진흥법

부산광역시사하구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사용제한) <u>체육시설의 관리를</u></p> <p><u>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</u></p> <p><u>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</u></p> <p><u>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</u></p> <p><u>있다고 인정될때</u></p> <p>2. <u>체육시설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</u></p> <p>3. <u>기타 사용을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</u></p> <p><u>있다고 인정될 때</u></p>	<p>(삭제)</p>